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1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5년 3월 3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업무가 이관되어 관련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구성에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’ 추진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는 ‘미래공간기획관’을 추가하고, 직제 순서에 맞게 각 호를 체계적으로 개편
(안 제10조제2항제3호)
- 나. 위원회 구성 조항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하여 위촉위원 근거 조항 추가 등 어구 수정(안 제8조, 안 제10조)
- 다. 용어 약칭 추가(안 제6조제3호, 안 제8조제2항, 안 제10조제2항제9호, 안 제15조)
- 라. 기타 경미한 사항 수정(안 제2조, 안 제11조의2, 안 제12조, 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」

나. 예산조치 : 협의완료(예산담당관 협조)

다. 협의사항

- (1) 법무담당관(규제심사): 규제없음
- (2) 예산담당관(비용추계)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
- (3) 감사담당관(부패영향평가): 평가제외
- (4) 양성평등담당관(성별영향평가): 개선사항 없음
- (5) 평가담당관(공공갈등진단): 갈등사항 없음
- (6) 조직담당관(위원회 신설): 해당없음
- (7)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·본부·국 검토의견: 해당없음

라. 기타

- (1) 입법예고(2025. 2. 13. ~ 3. 5.) 결과: 의견없음
- (2) 신·구조문 대비표: 붙임

※ 작성자 : 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채리나(☎2133 -7615)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격년단위”를 “격년 단위”로 한다.

제6조제3호 중 “서울시”를 “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위원 구성”을 “조직위원회의 위원”으로, “서울총괄건축가 및 시의원”을 “서울총괄건축가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, “서울 의”를 “시의”로, “한다”를 “구성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장은”을 “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”를 “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”로, “모두”를 “모두 회의에”로, “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”를 “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위원은 임기를”을 “위원의 임기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

제6항 중 “조직위원회”를 “조직위원회 회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정하여 운영할”을 “정할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위원”을 “운영위원회 위원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항 제7호 중 “서울시의원”을 “서울특별시의회 의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“서울의”를 “시의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”를 “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, 위원장이 회의에”로, “모두”를 “모두 회의에”로, “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”를 “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, “정하여 운영할”을 “정할”로 한다.

3. 미래공간기획관

8.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

제11조의2제4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1항 본문 중 “범위 안”을 “범위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적 외에

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경우”를 “경우 출연기관의 장에게”로, “소속공무원”을
“소속 공무원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서울시로”를 “시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2조(개최시기) 서울특별시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(이하 “서울비엔날레”라 한다)를 2017년부터 <u>격년단위</u> 로 개최한다.		제2조(개최시기) -----		-----
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서울비엔날레가 추구하는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	제6조(서울비엔날레의 기본방향) -----		-----
1. · 2. (생략)		1. · 2. (현행과 같음)		-----
3. 도시건축정책 발굴을 위한 <u>서울시</u> 및 공공기관·민간기업·대학·관계기관 및 단체인 교류·협력 거버넌스 구축		3. -----		<u>서울특별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</u>
4. (생략)		4. (현행과 같음)		-----
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		제8조(조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		-----
② <u>위원 구성</u> 은 시장, 행정1·2부시장, <u>서울총괄건축가</u> 및 <u>시의원과 그 외 서울의</u> 도시건축문화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<u>한다</u> .		② <u>조직위원회의 위원</u> -----		<u>서울총괄건축가(「서울특별시 건축 기본 조례」 제36조에 따라 위촉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) 및 서울특별시의회의원---</u> <u>시의</u> --- <u>구성한다</u> .
③ <u>위원장은</u> 시장이 하며, 부위원장은 행정1·2부시장 및 위원		③ <u>조직위원회의 위원장은</u> ---		-----

중 1명을 호선하여 3명으로 한다.

④ 조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(행정1부시장, 행정2부시장, 선출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)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

⑤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며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
⑥ 조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조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생략)

②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,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
--.

④ 조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며, 위원장이 회의에 -----

----- 모두 회의에 -----
---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.

⑤ ---- 위원의 임기는 -----

---.

⑥ 조직위원회 회의-----

--.

⑦ ----- 필요한

정할 -----.

제10조(운영위원회의 구성 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운영위원회 위원-----

--.

1. · 2. (생략)

<신설>

3. ~ 5. (생략)

7. 서울시의원 2명

8. 출연기관의 대표이사

9. 서울의 건축, 도시, 디자인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③ (생략)

④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위원장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관하고,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.

⑤ · ⑥ (생략)

⑦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 각 호의 민간전문가의

1. · 2. (현행과 같음)

3. 미래공간기획관

4. ~ 6. (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)

7.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-----

8. 제11조의 출연기관의 장

9. 시의 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 및 주관하고, 위원장이 회의에 -----

모두 회의에 -----
----- 미리 지명한 위원이 회의를 주관한다.

⑤ · 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 필요한 -----

정할 -----.

제11조의2(서울비엔날레 총감독 및 전시예술·디자인 전문가 등 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

위촉방법, 업무범위 및 대가지
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
시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조(출연금 등) ① 시장은
제11조에 따라 출연기관으로 하
여금 서울비엔날레 업무를 수행
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
위 안에서 출연금을 교부할 수
있다. 단, 출연기관은 출연금에
대하여는 서울비엔날레 업무 목
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.

②·③ (생략)

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시장
은 필요한 경우 서울비엔날레
업무에 관하여 자료를 제출하여
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
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
사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
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출연기
관의 장은 서울비엔날레 위탁업
무를 종료하였을 경우 잔여재산
을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시로
귀속하여야 한다.

----- 필요한 -----
-----.

제12조(출연금 등) ① -----

----- 범
위-----
---. 이 경우 출연기관은 교부
받은 출연금을 서울비엔날레 업
무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안
된다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지도 및 감독 등) ① ----
----- 경우 출연기관의 장에
게 -----
----- 소속 공무원---

---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잔여재산의 귀속) -----

----- 시로 -----
-----.

서울특별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: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에 해당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

제3조(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) ① 의원·위원회·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·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3. 미첨부 사유

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‘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’ 업무이관에 따른 당연직 운영위원을 추가하는 것으로 별도 비용발생요인이 없음

4. 작성자

미래공간기획관 미래공간담당관 채리나(2133-7615)